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30

발의연월일: 2024. 8. 23.

발 의 자:문진석・이기헌・박성준

천준호 • 이연희 • 양문석

김윤덕 • 이정문 • 김문수

진성준 · 장종태 · 강훈식

이언주 · 서영석 의원

(14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 3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최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증가하여 그 수가 2,500만명을 상회하고 있으나 무주택 세대에 대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소득 공제 혜택이 해당 세대의 세대주에 한정됨에 따라 혼인하고 무주택세대를 이루는 경우 해당 세대주의 배우자가 납입한 금액에는 소득공제가 인정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세대주 및 그 배우자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87조).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2항 본문 중 "세대주"를 "세대주(세대주의 배우자인 세대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제4항 및 제10항에서 같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생 략) 대한 소득공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 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 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2025년 -----세대주(세대주의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 배우자인 세대원을 포함한다. 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 이하 이 항, 제4항 및 제10항에 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서 같다)-----300만원을 납입한도로 하며, 제 4항제1호에 따른 소득공제 적 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 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40 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 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한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 주 택 당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

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	
다.	
③ ~ ⑪ (생 략)	③ ~ ① (현행과 같음)